



의안번호	제30호
------	------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논산시강경첫갈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b></p>
--

제 출 자	논 산 시 장
제출연월일	2017. 5. 23.

# 논산시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0호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5. 23.  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논산시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의 위촉위원 수를 개정하여 강경젓갈축제 추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함(제명, 안 제1조, 안 제2조, 안 제3조제2항)
- 나. 위원회 위원수를 개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, 위원 구성시 성별균형 참여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양성평등 실현(안 제3조제1항)
- 다. 위원회 위원 및 위촉하는 위원의 제외사유를 개정하여 재량규정의 구체성 및 객관성 확보(안 제3조제2항)
- 라. 위원 임기의 연임차수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이해충돌 가능성 해소(안 제4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기타사항
  - (1) 부패영향평가 : 검토의견 반영(안 제3조제2항, 안 제4조)
  - (2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검토의견 반영(안 제3조제1항)
  - (3) 규제심사 : 원안동의
  - (4)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
    - (가) 예고기간 : 2017. 2. 24. ~ 2017. 3. 16.
    - (나) 결과 : 의견없음
  - (5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  - (6) 충청남도소관실과 : 관광마케팅과(041-635-3891)

## 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# 논산시장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장경젓갈축제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논산시장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”를 “논산시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강경젓갈축제(이하 “젓갈축제”라 한다)”를 “강경젓갈축제”로, “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회”를 “논산시장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젓갈축제행사”를 “강경젓갈축제(이하 “젓갈축제”라 한다)행사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10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”를 “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장”을 “논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로, “시업무담당과장 및 강경읍 번영회장”을 “시업무담당과장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금품·향응수수, 불법로비, 배임·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.

제4조 중 “1년으로 하되”를 “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문화예술과장	송 순 이
	공연축제팀장	노 원 중
	담 당 자	이 건 택 (041-746-5663)

□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논산시장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운영</u> <u>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강경젓갈축</u> <u>제(이하 “젓갈축제”라 한다)의</u> 효 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경 <u>젓갈축</u> <u>제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</u> <u>다)의</u>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능) <u>위원회</u>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</p> <p>1. <u>젓갈축제행사</u> 일정 확정</p> <p>2. ~ 7. (생 략)</p> <p>제3조(구성) ① <u>위원회</u>는 위원장, 부 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<u>10명이</u> <u>상 15명 이하의</u> 위원으로 구성한 다.</p> <p>② <u>위원회</u> 위원은 강경맛깔젓협의 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 임원, 문화예술인 및 젓갈분야에 관련이 있는 사람 중에서 <u>시장</u>이 위촉하고</p>	<p><u>논산시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</u> <u>운영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<u>강경젓갈축제</u> ----- ----- <u>젓갈축제추진위</u> <u>원회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기능) <u>논산시 강경젓갈축제추</u> <u>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-</u> 1. <u>강경젓갈축제(이하 “젓갈축제”</u> <u>라 한다)행사</u> ----- 2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구성) ① ----- ----- <u>15명 이상 20</u> <u>명 이하의</u>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<u>10분의 6</u>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논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--</u></p>

논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회의원  
(강경지역구 출신), 강경읍장, 시  
업무담당과장 및 강경읍 번영회장  
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 <단서  
신설>

③ (생 략)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촉위원의 임  
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  
며, 당연직 위원<sup>의</sup> 임기는 당해직  
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-----  
----- 시  
업무담당과장-----  
----- . 다만, 금품·  
향응수수, 불법로비, 배임·횡령 등  
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위원의 임기) -----  
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-----  
-----  
-----.

**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**

- 제3조(구성)

**2. 비용추계결과**

**가. 추계의 전제**

- 논산시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 지급
  - 추가로 구성된 위원에 대한 세출 증가분 추계

**나. 추계결과**

- 2017년도

구 분	산출기초	금액(천원)
계		1,500천원
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	100천원×5명×3회	1,500천원

※ 재원조달방안 : 시비예산

**3. 작성자**

**문화예술과장 송순이**

### 〈연도별 비용추계표〉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17년)	2차년도 (2018년)	3차년도 (2019년)	4차년도 (2020년)	5차년도 (2021년)	계
세 입						
시 비						
세 출	1,500	1,500	1,500	1,500	1,500	7,500
민간행사사업보조	1,500	1,500	1,500	1,500	1,500	7,500
○ 위원회 참석수당	1,500	1,500	1,500	1,500	1,500	7,500
재원 조달	1,500	1,500	1,500	1,500	1,500	7,500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1,500	1,500	1,500	1,500	7,500
	지방세	1,500	1,500	1,500	1,500	7,500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

**□ 「지방자치법」**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*□ 「양성평등기본법」**

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참고 2**

**논산시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 위원 명단(2017.3.23.기준)**

구분	직 위	성 명	비 고
1	강경맛갈젓협의회 회장	조용훈	위원장
2	강경맛갈젓협의회 부회장	최충식	
3	논산문화원장	류제협	
4	자원봉사논산센터장	권주택	
5	기업인협의회장	이경배	
6	예충논산지회장	윤주민	
7	한국의식업중앙회 논산시지부	윤석용	
8	문화해설사 회장	유유철	
9	강경읍 번영회장	하영호	
10	강경읍 이장단장	김완중	
11	강경읍 주민자치위원장	박강희	
12	콩밭열무축제추진위원장	김시환	
13	(전)논산발전협의회장	김상구	
14	문화예술과장	송순이	
15	강경읍장	정명모	

※ 자문위원(4) : 임종진 시의원, 지진호교수, 유기준교수, 민양기교수